

예금(신탁) 잔액증명 의뢰서

본인확인	담당	책임자	감사통할	부점장

주식회사 하나은행

지점(부) 앞

신청 사항	신청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제	발급기준일				
	대상계좌 (발급세부)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계좌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계좌 ※ 전체계좌 선택시 계좌번호 작성 불요	신청 부수	국문	매	발급부수	전산인자
				영문	매		전산인자
	(통화코드 :)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계좌마스킹(계좌번호 일부숨김)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용도 :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수료 출금계좌 : 계좌번호 자필기재 ※ 잔액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청계좌에서 무통장·무인감 출금 처리함에 동의합니다							
수령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창구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카카오톡(문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: @						
계좌번호			계좌번호				
정기 발급	기준일자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월 : 일 일	수령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창구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: @			
	유효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년 월 일 ~ 년 월 일 ※ 최대 3년이하로 설정 가능					
	창구수령대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성명 : 생년월일 : 관계 :					
	우편수령대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성명 : 주소					

< 고객 확인 사항 >

- 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 당일은 예금의 잔액변경 및 대출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니 각종이체 지정일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.
- 잔액증명서 발급 시 예금인출 제한내용, 질권설정 등 예금관련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모두 표시합니다.
- 전체계좌를 신청한 경우 발급기준일 현재 보유하신 계좌에 대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므로 계좌번호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정기발급(창구수령)을 신청한 경우 수령지체 또는 교부불능 등으로 은행이 전달하지 못하여 지정일자의 익영업일에 폐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, 본인이 내점하지 못할 경우 상기 수령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정기발급(우편수령)을 신청한 경우 발송일 현재 당행에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며, 운송중 분실 및 3차수령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주소변동 등으로 1회 이상 우편물이 반송될때에는 발급을 중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
- 수령방법 E-mail 선택시 본인 E-mail임을 확인합니다.

귀 은행의 본인(당사) 명의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▶ 신청인(고객 확인 사항 동의확인 포함)

예금주 (동의확인)	성명 (상호명)	(서명/인)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
	영문명	선택항목	연락처	선택항목
	주소	선택항목		

※ 영문명은 영문잔액증명서 발급시 기재하며, 주소는 정기발급건 우편수령시 전산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니 등록된 주소 확인요함

위임장 ※위임시 작성	대리인성명	생년월일	
	본인과의 관계	연락처	선택항목
	주소	선택항목	
	위임인 (예금주)	본인은 상기 계좌의 (<input type="checkbox"/> 잔액증명서 발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발급 신청) 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 위임인 : (서명/인) ※ 개인은 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/서명,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법인인감 날인함	

